

제 18 조 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(2005.8.2, 2007.3.7, 2010.7.9 개정)

-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 - 1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, 인가, 면허, 등록,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, 인가, 면허, 등록,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
 - 2.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
 - 3. 소득세법 제168조,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거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자
 - 4. 기타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
-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(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